

업자 준수사항에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, 이러한 행위를 신고한 경우를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추가

다. 「훈령·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3년으로 설정 (제6조)

나. 식품위생법 전면 개정에 따른 적용법 규 수정

※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(www.kfda.go.kr)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『식품의 기준 및 규격』 일부개정고시

-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-66호, 2009. 8. 13 -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초콜릿류의 세균수 규격의 단서조항을 개정하여 다양한 신제품 개발 및 식품산업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접객업소의 조리판매 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여 조리식품의 안전성을 높여 위생취약부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의 과학적, 합리적 개정을 통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『식품의 기준 및 규격』을 일부개정고시 하였습니다.

□ 주요내용

가. 초콜릿류의 세균수 규격 단서조항 개정 (제5, 3, 5)

- (1) 초콜릿류에 대해 세균수 규격을 두고 있으나, 발효에 의해 생성된 유산균 등이 첨가된 식품에 대한 현실성 있는 기준 필요
- (2) 초콜릿류의 세균수 규격에 대해 발효 제품은 제외하도록 개정
- (3) 제조공정을 감안한 합리적인 규격 마련

나. 식품접객업소의 조리판매 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 개정(제 8)

- (1)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 대해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여 위생취약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
- (2) 원료기준, 조리 및 관리기준·규격의 개정
- (3)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조리 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

다. 일반검체채취를 위한 검체채취결정표

신설(제9, 3, 4)

- (1) 검사대상의 크기(수입량)를 고려한 합리적 검체채취수 규정이 필요
- (2) 일반 식품등의 검사대상 크기에 따라 비례적으로 검체채취수 증가
- (3) 보다 강화된 검체채취를 통해 식품등의 검사 신뢰성 확보

라. 다수의 영업자가 같은 선박으로 선적, 수입하는 벌크제품의 검체채취법 신설(제9, 4, 1), (4), ③)

- (1) 하나의 선박으로 수입되는 여러건의 벌크제품에 대한 합리적인 검사를 위한 검체채취법 필요
- (2) 같은 선박 벌크제품의 같은 처리를 위해 검체채취수 및 시험검체수 마련
- (3) 같은 제품에 대하여 같은 처리를 함으로써 부적합 시 합리적인 관리 가능

마. 식별표 부착 규정 신설 및 부표 10. 식별표 양식 마련(제 9, 4, 3) 및 제 12. 부표 10.)

- (1) 수거에 따른 검체 개봉 후 분실제품에 대한 민원발생
- (2) 수입식품검사의 경우 검체 수거 시 수거량 등을 식별표에 기재하여 당해 식품에 부착 규정 마련

- (3) 제품의 수거량 명확화를 통한 민원발생 감소

바. 개별 검체채취법 개정 및 신설(제9, 6)

- (1) 검사대상인 식품의 종류, 검사항목 등 특성을 고려한 검체채취법 마련 필요
- (2) 수산물의 검체채취법 개정 및 잔류농약, 아플라톡신, 동물용의약품, 유전자재조합성분 검사 및 컨테이너상 검체채취법 별도 마련
- (3) 비균질한 식품등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 검체채취법 마련으로 검사 신뢰성 강화

사. 한우확인시험법 개정(제10, 8.3)

- (1) 한우확인시험법에 「축산물의 가공기준및성분규격」에서 정한 시험법 추가
- (2) 한우확인시험법에 초위성체 마커 이용법을 제2법으로 신설
- (3) 식품에 대한 정확한 표시로 소비자권리 보호

아.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

※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(www.kfda.go.kr)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